

검 토 보 고 서

의 변 안 호	제37호
------------------	------

2021. 04. 08.

건 명	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4. 01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4. 0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(원안가결, 2019년 9월 23일)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건 10건중 2건 변경
 - 도시재생 뉴딜사업(해월마을)
 - 당초 : 반월동 33-44번지 외 8필지(5,291㎡), 4동
 - 변경 : 반월동 33-41번지 외 13필지(5,922㎡), 7동
 - 도시재생 뉴딜사업(강경마을)
 - 당초 : 강경읍 북옥리 78-3번지 외 33필지(7,336㎡), 17동
 - 변경 : 강경읍 북옥리 78-3번지 외 60필지(10,127㎡), 30동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8호
----------	------

2021. 04. 08.

건명	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4. 01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4. 01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2021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

연번	사업명	소관부서	비고
1	도시재생 인정사업	도시친화재생과	
2	문화관광시설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이전사업	관광체육과	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